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인력,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응할 복지 인력,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시 정원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 정원 총수 : 1,795명 → 1,824명(+29명)
 - 집행기관 정원 : 1,765명 → 1,786명(+21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 30명 → 38명(+8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정원 총계 : 1,795명 → 1,824명(+29명)
 - 일반직 계 : 1,754명 → 1,783명(+29명)
 - 5급 : 91명 → 90명(△1명)
 - 6급 이하 : 1,644명 → 1,674명(+30명)
- 한시 정원에 관한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복지인력 및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한시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원 29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1명 감원 및 6급 이하 30명 증원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인사권 관련 업무 등의 의회사무국 인력과 행정수요 대응역량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료에 따른 별표 4의 한시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은 불가피하며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